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1호 2015. 11. 16.(월)

선	기관의 장
람	

## 【조 례】

- 제1017호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1
- 제1018호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4
- 제1019호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제1020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제1021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규 칙】

- 제494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6

## 【훈 령】

- 제253호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18

## 【예 규】

## 【고 시】

- 제2015-160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3
- 제2015-16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5
- 제2015-163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37
- 제2015-16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39
- 제2015-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41
- 제2015-166호 공주시 도시자연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42

## 【공 고】

- 제2015-1620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열람 공고 ..... 46
- 제2015-1621호 공주시 금고지정 공고 ..... 49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10.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5년 11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017호

##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사업재원을 조성하고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정한 각 호의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조례 제3호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3조의 사업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

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10.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5년 11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018호

##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

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기념사업, 유해발굴 안장과 추모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여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의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진실 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공주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진실 규명에 따른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 지방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사업
3.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10.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5년 11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019호

###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을 “징수관·채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으로 한다.

제4조 중 “11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정정보증을 가입하는 회계관계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②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③ 공주시 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채무관리관” 을 “부채관리관” 으로 한다.

④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채권·채무관리관” 을 “채권·부채관리관” 으로, 제2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⑤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분임경리관” 을 “분임재무관” 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u>징수관 · 경리관 · 재산관리관 · 물품관리관 · 채권관리관 · 채무관리관 · 지출원 · 출납원</u>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p> <p>2. (생 략)</p> <p>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u>110만원</u>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 ----- -----.</p> <p>1. <u>징수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물품관리관 · 채권관리관 · 부채관리관 · 지출원 · 출납원</u> ----- -----</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재정보증한도액) ----- ----- ----- <u>1천만원</u> ----- -.</p>

공주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10.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5년 11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020호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켄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li>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li>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ul>

<b>전자파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li>○ <b>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li>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본(종이출력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b>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b>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	--	--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주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 10.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5년 11월 16일

공주시 조례 제1021호

###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8항” 을 “「주택법」 제43조제9항,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주택  
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하고, “2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 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예산의 범위에서”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입주자대표회의” 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주택법」 제43조제9항, 건축법 제11조 ----- ----- ----- ----- ----- -----.</p>
<p>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p>
<p>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지원할 수 있다.</p>	<p>② ----- ----- ----- -----예산의 범위안에서----- -----.</p>
<p>제5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 -----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회의----- -----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2015년 제19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15. 11. 4.)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5년 11월 16일

공주시 규칙 제494호

###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제4조 관련)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득점
		25	20	15	10	0	
실시가능성 (25)	■ 제안의 실현 가능 정도는 어떠한가?	25	20	15	10	0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25)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25	18	10	5	0	
		확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행정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20	15	10	5	0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적용범위 (15)	■ 수혜대상자는 많은가?	15	12	9	6	0	
		매우 많다	많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	15	12	9	6	3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총 계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5년 11월 16일

공주시 훈령 제253호

###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를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민국장” 을 “안전산업국장” 으로, “안전산업국장” 을 “시민국장” 으로, “정보감사담당관, 토지과장, 도시재생과장, 수도과장” 을 “미디어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수도과장, 토지과장”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0조” 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1조” 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규정은 「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u>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규정은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 제35조</u>-----</p> <p>-----</p> <p>-----</p> <p>-----</p> <p>-----</p> <p>-----</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시민국장</u>이 되며, 위원은 <u>안전산업국장</u>, 성장전략사업단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u>정보감사담당관</u>, 토지과장, 도시재생과장, 수도과장이 된다.</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안전산업국장</u></p> <p><u>장</u>----- <u>시민국장</u></p> <p>-----</p> <p>-----</p> <p>- <u>미디어담당관</u>, 도시정책과장, <u>수도과장</u>, 토지과장-----.</p>
<p>제2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p> <p>1. 「<u>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u>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p>	<p>제2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p> <p>-----</p> <p>-----</p> <p>-----</p> <p>-----</p> <p>-----</p> <p>-----</p> <p>-----</p> <p>1. 「<u>국가공간정보 기본법</u> 시행령」 제25조-----</p> <p>-----</p>

<p>2.·3. (생략)  ② ~ ⑤ (생략)  제24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시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생략)  2. <u>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u>  <u>해</u></p>	<p>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  2. <u>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u>  <u>해고 및 손해배</u></p>
<p>제29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생략)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침해·훼손 또는 불법이용  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행위  4.·5. (생략)  ② ~ ④ (생략)</p>	<p>제29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  -----  -----</p> <p>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  -----  -----</p> <p>4.·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공주시 제2015-118호(2015.09.01)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내용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공 주 시 장

### ■ 지정(개발계획) (변경)

####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명 칭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 다. 면 적 : 95,910.9㎡(단지조성 87,789.8㎡, 신국도32호선 8,121.1㎡)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유구소도읍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 또한, 사업부지에 기존공장 및 신규공장의 입지를 추진하여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공주시장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0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지정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의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에 한함)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합 계		60,980.5	100.0	
지정	<b>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의</b>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b>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b>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28,149.1	46.2	
지정	<b>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의</b>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b>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b> <b>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b>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11,050.5	18.1	
지정	<b>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의</b>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b>24. 1차금속제조업</b> <b>28. 전기장비제조업</b> <b>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b>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21,780.9	35.7	

## 6. 토지이용계획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7,789.8	-	87,789.8	100.0		
산업시설용지	60,980.5	-	60,980.5	69.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6,809.3	-	26,809.3	30.5	
	도 로	17,986.6	-	17,986.6	20.5	중로 2개소, 소로 4개소
	완충녹지	5,977.4	감)975.8	5,001.6	5.7	완충녹지 3개소
	공공공지	231.1	증)975.8	1,206.9	1.4	공공공지 1개소
	주 차 장	2,066.2	-	2,066.2	2.3	주차장 1개소
	하 천	548.0 <sup>1)</sup>	-	548.0 <sup>1)</sup>	0.6	하천 1개소

신국도 32호선 부지	8,121.1		8,121.1		
-------------	---------	--	---------	--	--

주1) 도로와 하천이 일부 중복 결정된 사항으로 중복면적(141㎡)은 하천면적 산정시 제외된 사항임

### 나.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생략

##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 가. 교통시설계획

#### 1) 도로

#####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643	17,986.6	3	505	5,704.5	-	-	-	3	1,138	12,282.1
중로	2	1,069	11,854.6	-	-	-	-	-	-	2	1,069	11,854.6
소로	4	574	6,132.0	3	505	5,704.5	-	-	-	1	69	427.5

※ 신국도32호선부지내 포함되는 도로면적은 제외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440	소로1-3	소로3-3	일반도로		'07. 5.15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629	중로2-5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12 (425)	중로3-6	중로1-2	일반도로		'07. 5.15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49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4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08.10.20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69	중로3-5	자카르타일반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08.10.20	

※ ( )안은 도로 전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주차장	백교리 619차 일원	2,066.2	-	2,066.2	'08.10.20	

나. 공간시설계획 (변경)

1)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4,057.1	감)975.8	3,081.3	'08.10.2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소로1-3호선 동측	531.2	-	531.2	'08.10.2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신국도 32호선 양측변	1,389.1	-	1,389.1	'08.10.20	

2)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백교리 628도 일원	231.1	증)975.8	1,206.9	'08.10.20	

다. 방재시설계획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하천	소하천	백교리 622도 일원	백교리 622도 일원	-	0.166	4.4 ~ 4.8	689	'08.10.20	도로와 중복결정 (A=141㎡)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260.7	260.7	-	
공 업 용 수	236.9	236.9	-	
생 활 용 수	23.8	23.8	-	

나. 하수처리계획

구 분	오수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오수발생량	21.5	21.5	-	

다. 전력공급계획

구 분	연간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3,337	23,337	-	
생산시설	23,154	23,154	-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183	183	-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31	31	-	
산 업 시 설	29	29	-	
공 중 전 화	2	2	-	

마.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연간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32,521	32,521	-	
생산시설	32,521	32,521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조서 참조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29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적 : 유구 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개발방법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공영개발

○ 주요업종

- 변경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나. 면적 : 95,910.9㎡(단지조성 87,789.8㎡, 신국도32호선 8,121.1㎡)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10년 (변경없음)

##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643	17,986.6	3	505	5,704.5	-	-	-	3	1,138	12,282.1
중로	2	1,069	11,854.6	-	-	-	-	-	-	2	1,069	11,854.6
소로	4	574	6,132.0	3	505	5,704.5	-	-	-	1	69	427.5

\* 신국도32호선부지내 포함되는 도로면적은 제외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440	소로1-3	소로3-3	일반 도로		'07. 5.15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629	중로2-5	중로3-5	일반 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12 (425)	중로3-6	중로1-2	일반 도로		'07. 5.15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49	중로3-6	중로3-5	일반 도로		'08.10.20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44	중로3-6	중로3-5	일반 도로		'08.10.20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69	중로3-5	자카드일반 산업단지 구역계	일반 도로		'08.10.20	

\* ( )안은 도로 전체 연장임

#### 나) 주차장

#####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주차장	백교리 619차 일원	2,066.2	-	2,066.2	'08.10.20	

## 2) 공간 시설 (변경)

### 가)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중로3-6호선 북측 및 서측	4,057.1	감)975.8	3,081.3	'08.10.2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소로1-3호선 동측	531.2	-	531.2	'08.10.2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신국도 32호선 양측변	1,389.1	-	1,389.1	'08.10.2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면적 : 4,057.1m <sup>2</sup> →3,081.3m <sup>2</sup> 감) 975.8m <sup>2</sup>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일부 완충녹지 (유구읍 백교리 629)번지 면적 축소

### 나)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백교리 628도 일원	231.1	증)975.8	1,206.9	'08.10.2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면적 : 231.1m <sup>2</sup> →1,206.9m <sup>2</sup> 증) 975.8m <sup>2</sup>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공지 면적 확장

## 3) 방재시설

### 가)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중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하천	소하천	백교리 622도 일원	백교리 622도 일원	-	0.166	4.4~4.8	689	'08.10.20	도로와 중복결정 (A=141m <sup>2</sup> )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95,910.9	-	95,910.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동일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공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B1	B1	22,893.4	①	백교리 603장	3,714.4	-
			②	백교리 604장	2,216.8	-
			③	백교리 605장	2,546.5	-
			④	백교리 607장	4,026.8	-
			⑤	백교리 606장	3,397.7	-
			⑥	백교리 608장	3,683.2	획지분할가능 (1,841.6m <sup>2</sup> /1,841.6m <sup>2</sup> )
			⑦	백교리 609장	3,308.0	-
B2	B2	11,050.5	①	백교리 610장	3,666.3	획지분할가능 (1,903.9m <sup>2</sup> /1,762.4m <sup>2</sup> )
			②	백교리 611장	3,671.5	-
			③	백교리 612장	3,712.7	획지분할가능 (1,974.4m <sup>2</sup> /1,738.3m <sup>2</sup> )
B3	B3	11,754.0	①	백교리 613장	3,926.1	획지분할가능 (2,195.0m <sup>2</sup> /1,731.1m <sup>2</sup> )
			②	백교리 614장	3,926.8	-
			③	백교리 615장	3,901.1	획지분할가능 (1,725.6m <sup>2</sup> /2,175.5m <sup>2</sup> )
B4	B4	10,026.9	①	백교리 616장	3,406.7	-
			②	백교리 617장	3,311.0	-
			③	백교리 618장	3,309.2	획지분할가능 (1,650.2m <sup>2</sup> /1,659.0m <sup>2</sup> )
B5	B5	1,986.5	①	백교리 601장	1,986.5	-
B6	B6	3,269.2	①	백교리 602장	3,269.2	-

#### 나)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B7	B7	2,066.2	①	백교리 619차	2,066.2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용지 (B1~B6)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나)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차 장 용 지 (B7)	유구읍 백교리 619번지 일원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구역내 가각부	○ 차량출입 불허구간 (10m) 지정	○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29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0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30 (산성동)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신성동 56-5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30 (신성동)	20100112	20100112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2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96-5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라2길 12-3 (금성동)	20100112	20100112	20100112	지역특성 반영과 일련번호 방식 통합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거리 5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여너길 87	20100202	20100202	20100202	해당 지리마을 명칭을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세종리 6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세종길 217-37	20111205	20111205	20111205	세종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의리 154-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중앙길 34-4	20100112	20100112	20100112	해당 지리마을 명칭을 활용
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양리 638-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신성단지길 33-26	20131023	20131023	20131023	탄천면탄천단지 중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60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동두길 57-8	20100112	20100112	20100112	원타의 주변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상인 지리마을 명칭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2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110	20100112	20100112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26-3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영광길 71-3	20100202	20100202	20100202	해당 지리마을 명칭을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26-3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영광길 71-11	20100202	20100202	20100202	해당 지리마을 명칭을 활용
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632, 43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0-12	20100112	20100112	20100112	보흥리마을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
1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57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티곶마을길 5	20100112	20100112	20100112	봉티곶개라는 고개 명칭과 봉현이라는 지리마을명칭을 활용하여 봉티곶마을로 부여
1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6278-1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아래안영광길 108-1	20100112	20100112	20100112	안영리 아랫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아래안영광길로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0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매산동길 24 (신관동)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변경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5-11, 185-16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5-11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4 (신관동)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4 (신관동)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4 (신관동)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4 (신관동)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5-11, 185-16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5-16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4 (신관동)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4 (신관동)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4-2 (신관동)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4-2 (신관동)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465, 466, 467, 47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465, 46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42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42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42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427	2010.01.12	넷물이 구불구불 흐른다 하여 구부내라 불렀던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465, 466, 467, 47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471, 470, 46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42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42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42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427	2010.01.12	넷물이 구불구불 흐른다 하여 구부내라 불렀던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불정동 163	충청남도 공주시 불정동 163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3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3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3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3 (불정동)	2010.02.02	절타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 변하여 생긴 저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불정동 163	충청남도 공주시 불정동 163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3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7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7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7 (불정동)	2010.02.02	절타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 변하여 생긴 저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불정동 163	충청남도 공주시 불정동 163-1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7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7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9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9 (불정동)	2010.02.02	절타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 변하여 생긴 저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불정동 163	충청남도 공주시 불정동 163-1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9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9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9 (불정동)	충청남도 공주시 저대길 19 (불정동)	2010.02.02	절타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 변하여 생긴 저연마을 명칭을 활용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06.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산막1길 85 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5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산만1길 85	2015.11.06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154-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음달길 34-4	2015.11.06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154-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음달길 34-4	2015.11.06	건물말소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신관동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66-8 외 19필지

3. 사업주체

- 상 호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두석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사업내용

- 분양구분 : 민간분양
- 대지면적 : 29,438㎡
- 건축면적 : 9,379.243㎡
- 연 면 적 : 91,285.058㎡
- 건설규모 : 아파트 14동
- 세 대 수 : 722세대
- 평 형 : 59.532㎡(59형 300세대), 84.915㎡(84형 422세대)
- 사업기간 : 2015.08. ~ 2018.04.30.(당초 2018.12.30.)

5. 사업계획승인일 : 2015.08.27.(최초)

6. 의제사항

- 없 음 -

공주시 고시 제2015-166호

## 공주시 도시자연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공주시 고시 제2015-158호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산성공원, 반죽공원, 월송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효력 상실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정책과(☎041- 840-85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 공 주 시 장

□ 실효일자 : 2015. 10. 1 (변경없음)

□ 실효사유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

□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1. 공원명 : 산성공원

가. 도시계획시설 실효조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산성공원	도시자연공원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일원	527,130	528,305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나. 토지조서

○ 지목별 토지조서

〈기정〉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구성비(%)
공	251,132.1	246,794.8	27	46.89
과	33,334.7	32,634.7	10	6.20
구	2,870.1	637.2	5	0.12
답	5,164.0	5,164.0	3	0.98
대	25,833.7	22,794.6	92	4.33
도	25,556.2	7,498.6	12	1.43
묘	390.5	390.5	2	0.07
사	11,583.0	11,583.0	3	2.20
임	115,628.4	106,102.0	14	20.16
잡	193.0	193.0	1	0.04
전	96,289.9	87,101.0	165	16.55
중	4,975.4	4,972.7	2	0.94
천	237,441.0	498.3	1	0.09
가지번		10.6	1	0.00
합계	810,392	526,375	338	100.00

〈변경〉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구성비(%)
공	251,132.1	246,794.8	27	46.71
과	33,334.7	32,634.7	10	6.18
구	2,870.1	637.2	5	0.12
답	7,094.0	7,094.0	5	1.34
대	25,833.7	22,794.6	92	4.32
도	25,556.2	7,498.6	12	1.42
묘	390.5	390.5	2	0.07
사	11,583.0	11,583.0	3	2.19
임	115,628.4	106,102.0	14	20.08
잡	193.0	193.0	1	0.04
전	96,289.9	87,101.0	165	16.49
중	4,975.4	4,972.7	2	0.94
천	237,441.0	498.3	1	0.09
가지번		10.6	1	0.01
합계	812,322	528,305	340	100.00

다. 지형도면 : 별첨

## 2. 공원명 : 반죽공원

### 가. 도시계획시설 실효조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반죽공원	도시자연공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68-1일원	274,432	275,538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 나. 토지조서

#### ○ 지목별 토지조서

〈기정〉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구성비(%)
구	48,326.5	2,227.8	2	0.81
답	554.0	548.3	2	0.20
대	1,937.7	322.6	5	0.12
도	5,217.3	641.2	5	0.23
유	2,099.0	1,315.2	6	0.48
임	285,862.3	252,449.7	20	91.59
전	23,540.4	15,929.5	27	5.78
천	3,658.2	1,937.3	5	0.70
가지번		257.4	1	0.09
합계	371,195.4	275,629	73	100.00

〈변경〉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구성비(%)
구	46,414.5	2,140.0	2	0.78
답	554.0	548.0	2	0.20
대	1,937.7	323.0	5	0.12
도	5,217.3	642.0	5	0.23
유	2,099.0	1,315.0	6	0.48
임	285,862.3	252,448.0	20	91.62
전	23,540.4	15,928.0	27	5.78
천	3,658.2	1,937.0	5	0.70
가지번		257.0	1	0.09
합계	369,283.4	275,538.0	73	100.00

### 다. 지형도면 : 별첨

### 3. 공원명 : 월송공원

#### 가. 도시계획시설 실효조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월송공원	도시자연공원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279-3일원	643,086	634,360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 나. 토지조서

##### ○ 지목별 토지조서

〈기정〉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구성비(%)
구	10,355.0	4,617.2	5	0.66
답	4,674.0	4,674.0	3	0.67
도	26,066.0	5,699.6	7	0.82
수	66,599.0	65,519.9	24	9.38
임	703,735.0	600,550.8	31	85.98
전	23,197.0	17,081.9	17	2.45
천	186,051.0	269.8	1	0.04
가지번		10.4	1	0.00
합계	1,020,677	698,423.6	89	100.00

〈변경〉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구성비(%)
구	10,355.0	4,618.0	5	0.73
답	4,674.0	4,674.0	3	0.74
도	24,337.0	5,249.0	5	0.83
수	49,382.0	1,937.0	6	0.31
임	703,735.0	600,521.0	31	94.66
전	23,197.0	17,081.0	17	2.69
천	186,051.0	270.0	1	0.04
가지번		10.0	1	0.00
합계	1,001,731	634,360	69	100.00

#### 다. 지형도면 : 별첨

##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열람 공고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5. 11. 16.

#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15. 11. 16. ~ 11. 30. (14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50),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5. 11. 30. 18:00
  - 제출처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 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첨부1
5. 기타
  - 가. 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결정(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 향후 행정절차(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중 본 열람 공고 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 다. 관련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64,285,529	-	864,285,529	100.00		
관리 계획 대상 지역	도시지역	59,674,897	-	59,674,897	6.90	
	소 계	311,416,380	증)5,252,234	316,668,614	36.65	(100.00)
	관리지역(미세분)	11,833	-	11,833	0.01	(0.01)
	보전관리지역	99,347,986	증)2,841,416	102,189,402	11.82	(32.27)
	생산관리지역	47,471,795	증)134,604	47,606,399	5.51	(15.03)
	계획관리지역	164,584,766	증)2,276,214	166,860,980	19.31	(52.69)
	농림지역	450,326,568	감)5,252,234	445,074,334	51.49	
	자연환경보전지역	42,867,684	-	42,867,684	4.96	

※ 비고란의 ( )안의 구성비는 총 관리지역 면적에 대한 해당 용도지역 비율(%)임

■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합 계(m <sup>2</sup> )	면 적 (m <sup>2</sup> )					비 고	
		공주시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합 계	864,285,529	91,219,081	101,113,646	63,288,413	64,304,682	84,004,036		
관 리 계 획 대 상 지 역	도시지역	59,674,897	39,708,058	2,971,197	-	998,233	-	
	소 계	316,668,614	29,038,543	32,945,114	31,184,430	38,248,895	30,494,862	
	관리지역 (미세분)	11,833	-	-	-	-	-	
	보전관리 지 역	102,189,402	8,365,481	9,654,978	9,212,598	11,404,520	10,229,601	
	생산관리 지 역	47,606,399	2,864,542	1,941,974	10,870,819	7,440,365	8,134,945	
	계획관리 지 역	166,860,980	17,808,520	21,348,162	11,101,013	19,404,010	12,130,316	
	농림지역	445,074,334	22,472,480	64,734,605	32,103,983	25,057,554	38,526,495	
	자연환경 보전지역	42,867,684	-	462,730	-	-	14,982,679	

구 분	면 적 (m <sup>2</sup> )						비 고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합 계	59,989,418	51,273,228	108,636,258	80,125,664	80,189,314	80,141,789		
관 리 계 획 대 상 지 역	도시지역	15,316,574	680,835	-	-	-	-	
	소 계	6,368,625	25,019,637	36,639,665	35,538,983	28,357,724	22,832,136	
	관리지역 (미세분)	-	-	-	-	11,833	-	
	보전관리 지 역	1,628,956	10,332,390	11,465,913	12,582,828	13,408,449	3,903,688	
	생산관리 지 역	177,412	3,243,758	4,968,261	6,134,672	1,020,412	809,239	
	계획관리 지 역	4,562,257	11,443,489	20,205,491	16,821,483	13,917,030	18,119,209	
	농림지역	10,881,944	25,572,756	71,996,593	44,586,681	51,831,590	57,309,653	
	자연환경 보전지역	27,422,275	-	-	-	-	-	

## 공주시 금고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 공 주 시 장

1. 금고 지정: NH농협은행(주) 공주시지부
2.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지정기간 : 2016. 1. 1 ~ 2019. 12. 31 (4년간)
4.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 및 지방채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